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20

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:이정문・박홍배・박 정

조승래 • 이학영 • 이연희

이훈기 • 문진석 • 서영석

이인영 · 임광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ESG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,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.

이러한 '사회적 책임투자'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(UN PRI)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,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,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(GPFG)등 주요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.

이에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·사회·지배 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 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5 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지배 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25조(여유자금의	운용)	(생	제25조(여유자금의 운용) ① (현
략)			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유자
			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
			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
			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
			<u>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</u>
			를 고려할 수 있다.